

# KCC 협력회사 행동규범

2022.11



## <전 문>

KCC는 더 좋은 삶을 위한 가치창조 라는 경영이념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KCC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본 행동규범은 모든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노동 및 인권, 안전보건, 환경, 윤리, 관리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CC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의 적용대상인 모든 협력회사는 해당 협력회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KCC 또는 KCC가 지정한 외부 기관은 협력회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협력회사를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준수에 대한 점검 및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KCC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회사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조치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고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조항은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노동자 기본권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에 기반하며 이를 존중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협력회사의 이행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되어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KC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해당 국가의 법규와 상충될 시에는 해당 국가의 법규를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본 문>

### 1. 노동 및 인권

#### 1.1 강제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노동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강제노동이나 비자발적 노동, 착취, 노예제 및 인신매매를 이용하지 않는 자발적 근로이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 1.2 아동노동 금지

협력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되지 않아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3 근로 시간 준수

협력회사는 사업을 하는 국가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1.4 임금 및 복리후생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또는 급여 지급 내역은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1.5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불법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임금, 승진, 보상, 교육 기회 등 채용 및

고용 활동에서 인종, 연령, 성별, 성 정체성, 민족, 장애, 종교, 정치 성향,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등에 근거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1.6 결사의 자유 보장

협력회사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 및 근로자 대표는 차별대우, 보복행위, 위협 및 괴롭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영진과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 안전보건

### 2.1 안전 관리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위험요소(예: 화학물질, 전기 및 기타 에너지원, 화재, 차량, 낙상 등)에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로부터 위험요소를 통제 및 제거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 2.2 비상상황 대응

협력회사는 비상 상황 보고 체계, 근로자 통지 및 대피 절차, 근로자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잠재적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비상 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2.3 안전보건 교육

협력회사는 기계, 전기, 화학, 화재 및 물리적 위험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 현장의 식별된 위험에 대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작업장 안전 보건 정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모국어 또는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 2.4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협력회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3. 환경

#### 3.1 환경 관련 체계 구축 및 기준 준수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수자원 사용량 및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회사는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수자원 사용량 및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며, 법적 기준 또는 그 이상의 내부기준을 수립하여 준수해야 합니다.

#### 3.2 유해물질 관리

협력회사는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한 화학 물질이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활용 또는 재사용 및 폐기의 과정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취급하는 유해물질을 파악하여 관련 위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 및 공개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3.3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협력회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를 취득·유지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결과 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 4. 윤리

#### 4.1 정도경영 준수

협력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의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이 요구됩니다.

협력회사는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 청탁, 알선, 횡령, 갈취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부당한 대가를 의도해서도 안 됩니다.

## 4.2 부당 이익 금지

협력회사 임직원은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약속 받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4.3 투명한 정보 공개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실행하고 이를 협력회사의 회계장부와 업무기록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의 노동, 안전과 보건, 환경관리 실태, 사업 활동, 지배구조,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 4.4 공정 거래

협력회사는 공정 거래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 4.5 책임 있는 광물 조달

협력회사는 제품에 포함된 탄탈륨, 텅스텐, 주석, 금 등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해당 프로세스에 따라 광물 및 원재료의 원산지과 제련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 윤리 위반,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4.6 개인정보 보호

협력회사는 공급업체, 고객사, 소비자 및 직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5. 경영시스템

## 5.1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환경적 책임성명서(경영진 신년사, 내부지침, 사내게시판 등)를 현지어로 작성하여 해당 사내에 공유해야 합니다.

## 5.2 담당자 선임

협력회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실무자를 선임하고 경영시스템 및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현황을 감독하는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5.3 리스크 점검

협력회사는 인권 및 노동관행, 안전보건, 환경, 윤리 등의 분야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 5.4 교육 및 소통

협력회사의 정책, 절차,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 5.5 고충 처리

협력회사는 임직원이 본 행동규범 내용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 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임직원의 고충 처리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

## 5.6 하위 협력회사 관리

협력회사는 2차 협력회사 및 하위 협력회사들이 본 규범의 내용, 법률 및 규제 요건, 사회적/환경적 책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